

특 허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6허10065 등록무효(디)

원 고 1. A

2.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A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 담당변리사 임희남

피 고 D

변 론 종 결 2026. 5. 20.

판 결 선 고 2026. 6. 17.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6. 1. 29. 2025당261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20. 4. 25./ 2020. 7. 31./ 제1069427호
-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축사용 목걸이를 체결구
- 3)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주요 도면: [별지 1]과 같다.
- 4) 디자인권자: 피고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을 제1호증)

2019. 9. 11. 공고된 국내 등록디자인공보 제30-1022436호로 공개된 '축사용 자동목걸이를 고정구'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4호증)

1999. 10. 15. 공고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58968호로 공개된 '우사용 자동 목걸이 틀'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으로, 그 도면은 [별지 2]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5호증)

2013. 6. 11. 공고된 국내 등록특허공보 제10-1272313호로 공개된 '회전제한 및 잠금 구조를 갖춘 축사용 자동목걸이틀'이라는 명칭의 특허로, 그 도면은 [별지 2]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6호증)

2020. 4. 24. 공고된 국내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491551호로 공개된 '안전성이 향상된 우사용 자동 목걸이 틀'이라는 명칭의 실용신안으로, 그 도면은 [별지 2] 제4항과 같다.

다.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25. 9.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5당2619호로 심리한 후 2026. 1. 29.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대상물품은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대비 시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

호에 해당하거나, 선행디자인 2 내지 4를 참조하여 선행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1) 양 디자인은 공통적으로 직사각형 형상의 체결판, 원통형의 말림부 및 관통구 형상을 갖지만, 이는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어 왔고 단순하며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반면 양 디자인은 전체 형상의 가로·세로 비율, 관통구 형성 유무, 말림부와 체결판 본체의 이격 여부 등에 차이가 있어 이로 인해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하지 않아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 디자인의 위 차이점들은 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축사용 목걸이틀 체결구'의 기본적 기능과는 무관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만의 독창적인 미감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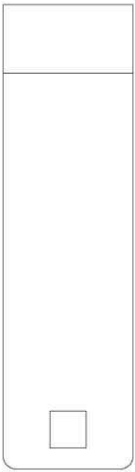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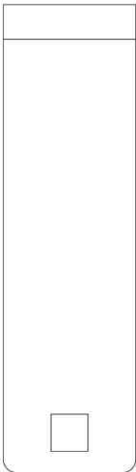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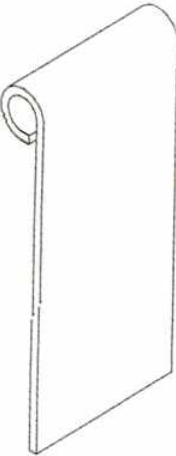
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대비

양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난 사시도 등의 도면을 대비하면 아래와 같다.¹⁾

1)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가깝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그 미감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722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이에 선행디자인 1의 대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즉 ① 선행디자인 1에 관한 위 사시도는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도면 1.1을 시계반대방향으로 약 120도 회전한 것이고, ② 선행디자인 1의 위 측면도는 그 좌측면을 표현한 도면 1.4를 시계반대방향으로 90도 회전한 것이고, ③ 선행디자인 1의 위 저면도는 그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 1.3을 180도 회전한 것이다.

구분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저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인 1					

2) 공통점

양 디자인은 모두 측사용 목걸이틀 체결구에 관한 디자인으로, ㉠ 전체적으로 세로로 긴 직사각형 체결판의 형상이며, ㉡ 상단부 끝단에 속이 빈 원통형의 말림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3) 차이점

㉠ 첫째, 정면 형상의 가로(폭)와 세로(길이)의 비율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에 비해 세로(길이)가 가로(폭)보다 긴 정도가 더 크다(이하 '차이점 ㉠

이라 하고' 나머지 차이점들 역시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지칭한다). ② 둘째, 저면 형상의 가로(폭)와 세로(길이) 비율을 보면,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비해 가로(폭)가 세로(길이)보다 긴 정도가 더 크다. ③ 셋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달리 하단에 직사각형 형상의 관통구가 형성되어 있다. ④ 넷째, 말림부의 형상

을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말림부 끝부분이 체결판의 내면과 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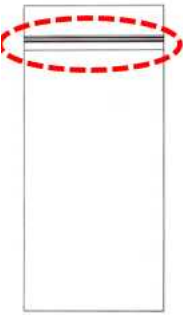
착된 반면, 선행디자인 1은 ''와 같이 말림부 끝부분이 체결판 내면과 이격되어

있다. ⑤ 다섯째, 체결판 하단부를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와

같이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반면에, 선행디자인 1은 ''와 같이

각진 모서리로 형성되어 있다. ⑥ 여섯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달리 선행디자인 1은

말림부 외주면에 ''와 같이 2개의 사각홈이 형성되어 정면 상단에 여러 개의

수평선이 ''와 같이 확인된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용이성 여부에 대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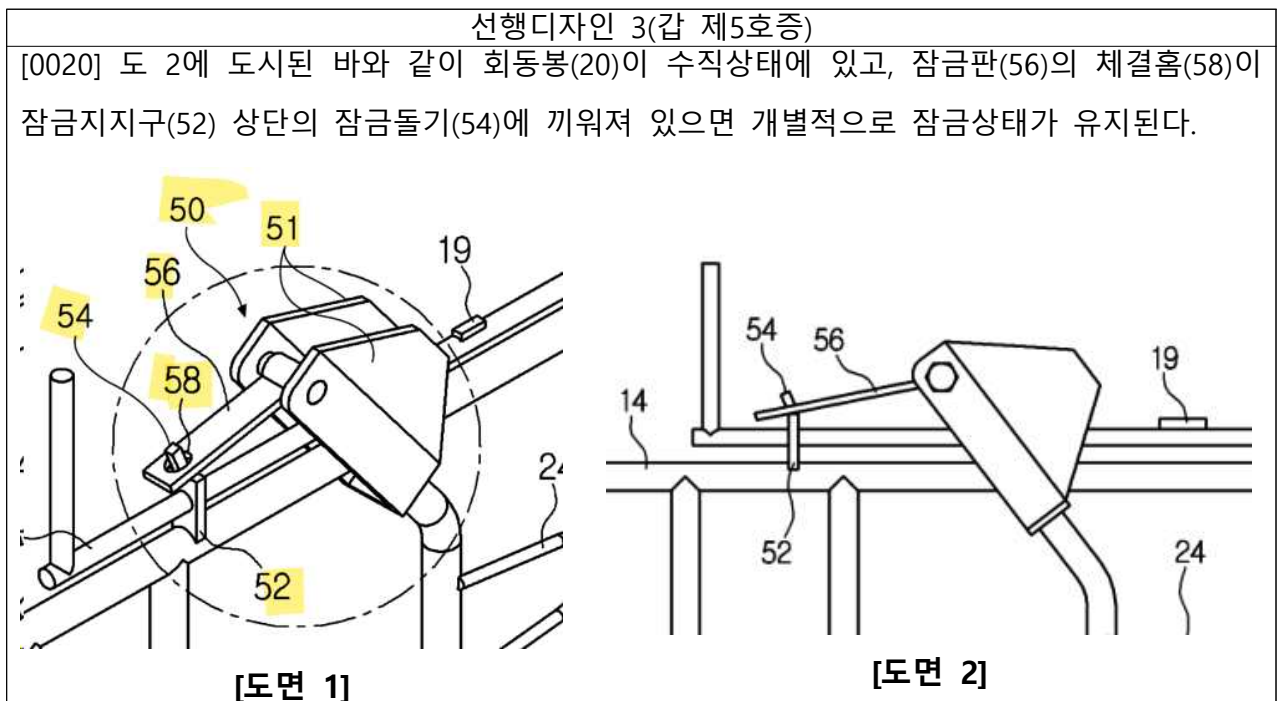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

합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3, 4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차이점 ①, ②는 관상의 본체 정면부와 저면부의 형상의 가로(폭)와 세로(길이)의 길이의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별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의 정면부와 저면부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비율을 적당히 조절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차이점 ③에 관하여 본다.

선행디자인 3(갑 제5호증)에는 아래의 명세서 기재 및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잠금판(56)에 잠금돌기(54)가 끼워짐으로써 잠금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원형의 관통구(체결홈(58))가 형성되어 있다.



선행디자인 4(갑 제6호증)에는 아래의 명세서 기재 및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키부재(230)에 제2 걸림돌기(410)가 끼워져 체결됨으로써 가축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는 직사각형의 관통구(슬릿(231))가 형성되어 있다.

선행디자인 4(갑 제6호증)

[0042] 한편, 상황에 따라 특정 가축의 구속 상태를 유지시키거나 특정 가축만을 목걸이 틀에 구속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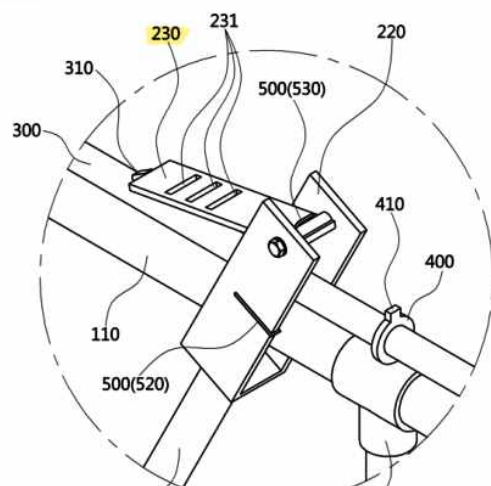
[0043] 이를 위해, 도 7에 도시된 바와 같이 키부재(230)를 지지부(400) 방향으로 회동시켜 제2 걸림돌기(410)에 걸림되도록 하면 목걸이부(200)가 메인핸들부(300)의 조작과 상관없이 가축의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0044] 키부재(230)는 축사 관리자의 별도 조작에 의해 회동되어 제2 걸림돌기(410)에 걸림 지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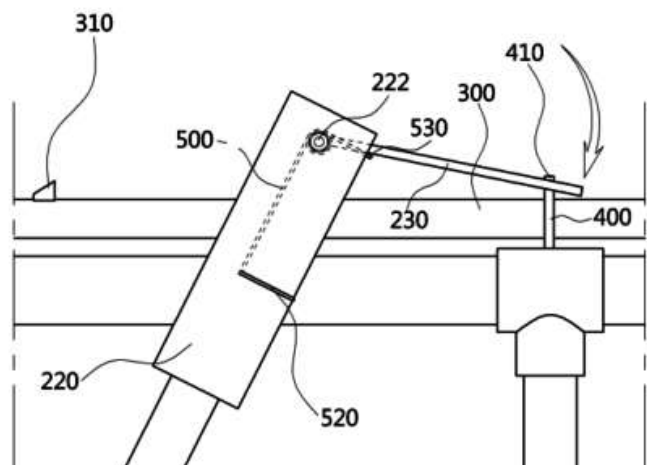
[0052] 한편, 키부재(230)에는 상기 제2 걸림돌기(410)가 체결되는 복수 개의 슬릿(231)이 관통 형성될 수 있다.

[0053] 제2 걸림돌기(410)와 키부재(230)의 걸림 지지 관계는 슬릿(231)과 제2 걸림돌기(410)의 체결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복수 개의 슬릿(231)을 구비하게 되면 목걸이부(200)의 회동 각도를 미세하게 조절하여 고정시킬 수 있다.

도면2



도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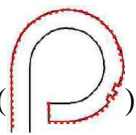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관통구는 선행디자인 3의 체결홈(58), 선행디자인 4의 슬릿(231)과 마찬가지로, 축사용 목걸이를 체결구가 설치되는 지지체에 형성된 돌기(선

행디자인 3의 잠금돌기 및 선행디자인 4의 제2 걸림돌기와 유사한 돌출 형성된 구조물)에 끼워져 고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동일한 기능과 구조를 가지는 체결홈(58)과 슬릿(231)이 선행디자인 3, 4에 나타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선행디자인 3에는 원형의 관통구가, 선행디자인 4에는 복수의 직사각형의 슬릿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형성된 단수의 직사각형의 관통구와는 그 형상이나 개수의 차이가 있으나, ① 돌기가 형성된 부재에 끼워져 고정시키기 위한 용도로 형성되는 관통구의 형상으로 원형과 직사각형이 혼하게 사용되고 있는 점, ② 선행디자인 4에서 직사각형의 슬릿을 복수로 형성한 것은 목걸이부의 회동 각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인 점(갑 제6호증 [0053])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3의 원형의 관통구의 형상을 흔히 사용되는 다른 형상인 직사각형으로 변형하거나 회동 각도의 조절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선행디자인 4에 형성된 복수의 관통구를 하나의 관통구로 변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통상의 디자이너는 선행디자인 1에 선행디자인 3, 4를 결합하여 차이점 3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차이점 ④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의 판상의 본체 상부에 형성된 말림부 형상의 차이이다.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모두 판상의 본체 상부가 원통 형상의 말림부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공통되나, 단지 그 말림부의 형

상에 있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말림부()가 선행디자인 1의 말림부()에 비하여 끝단이 좀더 원형에 가깝게 휘어져 본체에 더 밀착되어 있다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위 차이는 절곡 공정의 방식이나 다른 부재와의 체결의 안정성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적인 변형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양 디자인의 말림부의 형상으로부터 느껴지는 주된 심미감은 그 공통적인 특징인 '판상의 본체의 상부가 둥글게 휘어져 형성된 원통 형상의 말림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 끝단의 말림 정도(원형으로 휘어진 정도)나 체결판과의 이격 여부에 관한 다소의 차이로부터 그 심미감의 차이가 느껴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말림부 끝단을 조금 더 원형에 가깝게 휘어지도록 하여 본체에 밀착되도록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이점 ④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을 통상의 창작 능력 범위 내에서 변형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차이점 ⑤는 정면부의 모서리 부분이 각진 형상인지 둥근 형상인지에 관한 차이인데, 이로 인하여 미감적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직사각형의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형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물품이 속한 분야에서 흔한 표현 수법이므로, 선행디자인 1의 본체의 각진 모서리 부분을 둥글게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변형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이점 ⑤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을 통상의 창작 능력 범위 내에서 변형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마) 차이점 ⑥은, 선행디자인 1의 말림부 외주면에 형성된 2개의 사각홈과 그로 인하여 선행디자인 1의 정면부 상단에 보이는 복수의 수평선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선행디자인 1에 구비된 2개의 사각홈의 형상을 생략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생략이 어렵다거나 그로 인하여 전체적인 미감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의 사각홈의 구

성을 단순히 삭제함으로써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인다.

다. 소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소영

판사 박은희

판사 권원명

[별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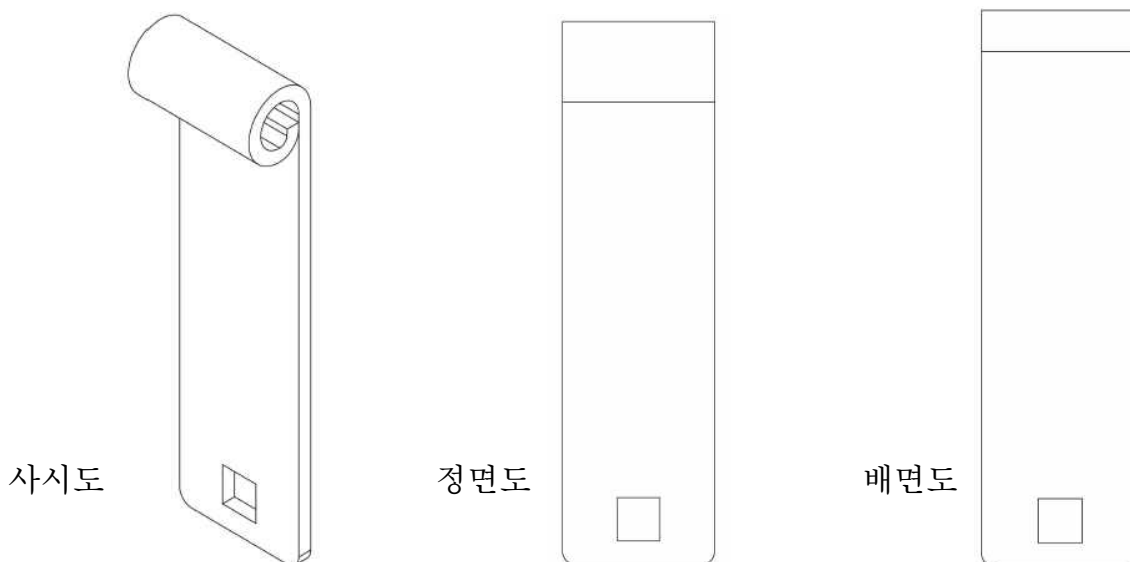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축사용 목걸이틀 체결구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임.
2. 본 디자인은 축산농가에서 소와 같은 가축에게 사료를 먹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축사용 목걸이틀을 개폐가능하도록 체결시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 디자인 "축사용 목걸이틀 체결구"의 형상이나 모양 및 이들을 결합한 것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좌측면도



우측면도



저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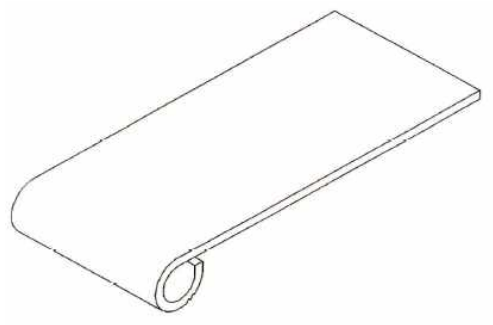
끝.

[별지 2]

선행디자인들의 도면

1. 선행디자인 1

사시도(도면 1.1)



정면도(도면 1.2)



배면도(도면 1.3)



좌측면도(도면 1.4)



우측면도(도면 1.5)



평면도(도면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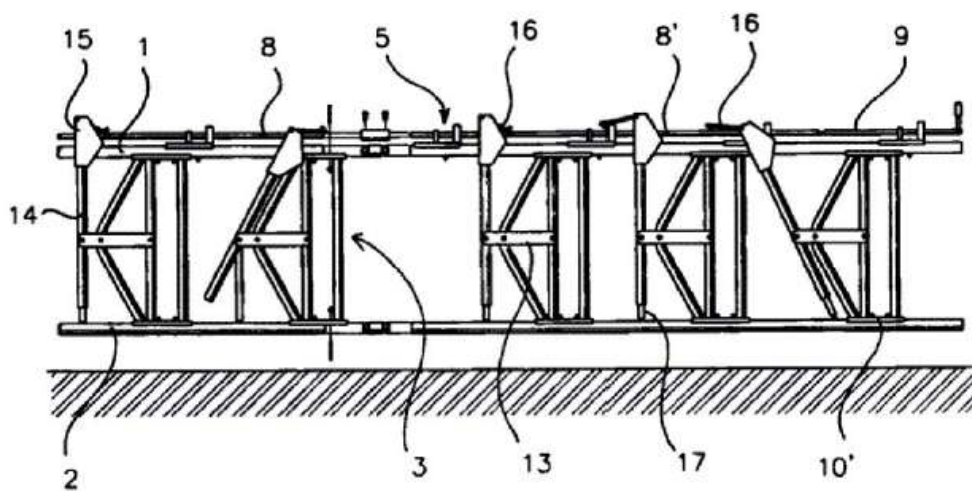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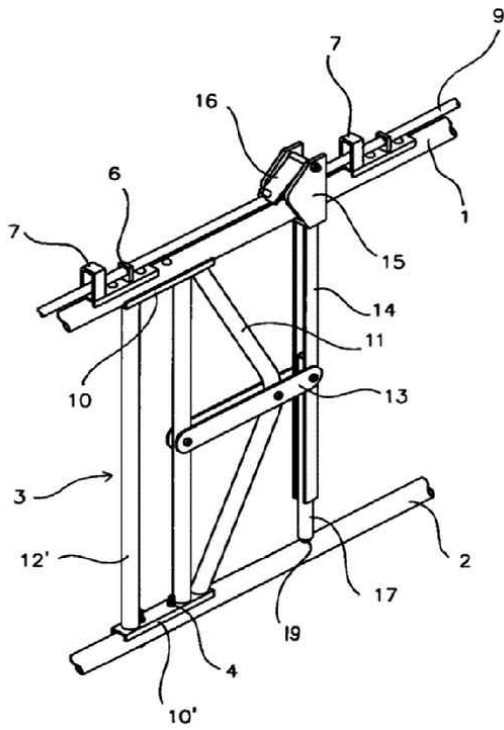
저면도(도면 1.7)



2. 선행디자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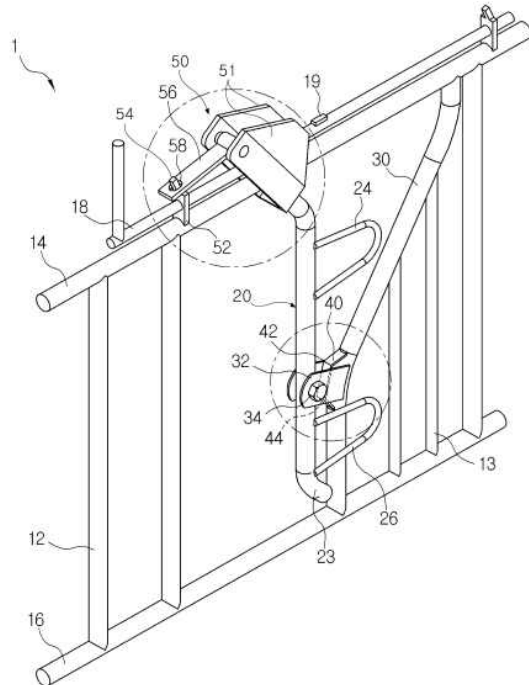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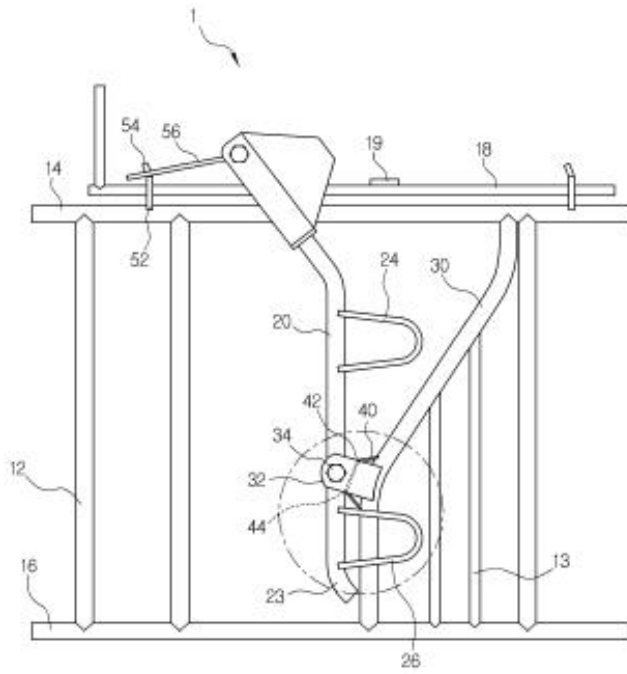


도면 2

3. 선행디자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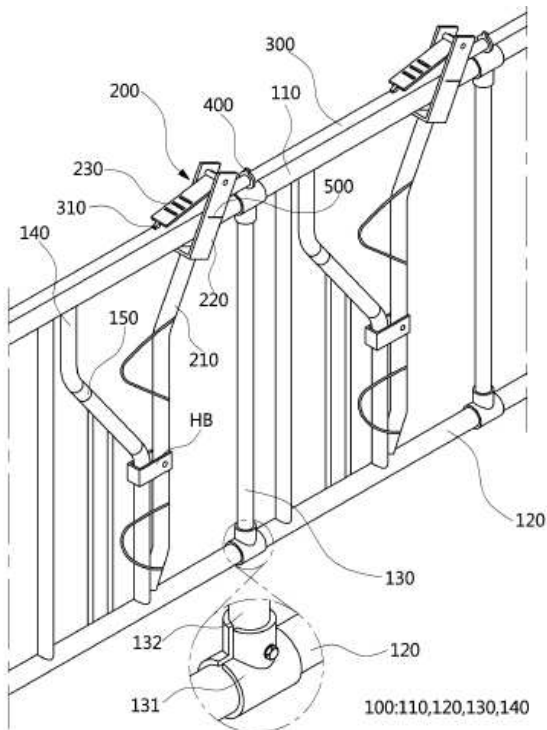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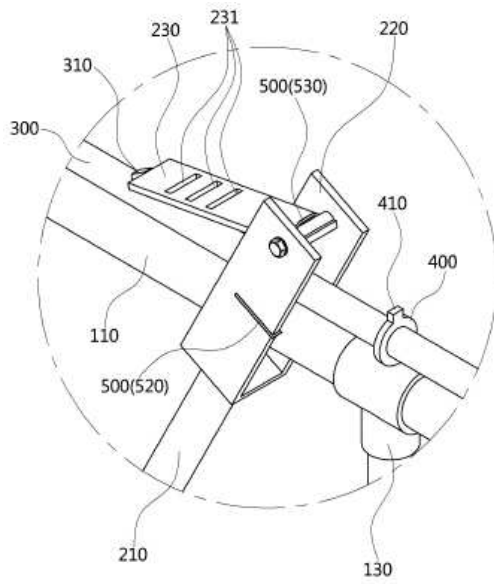


도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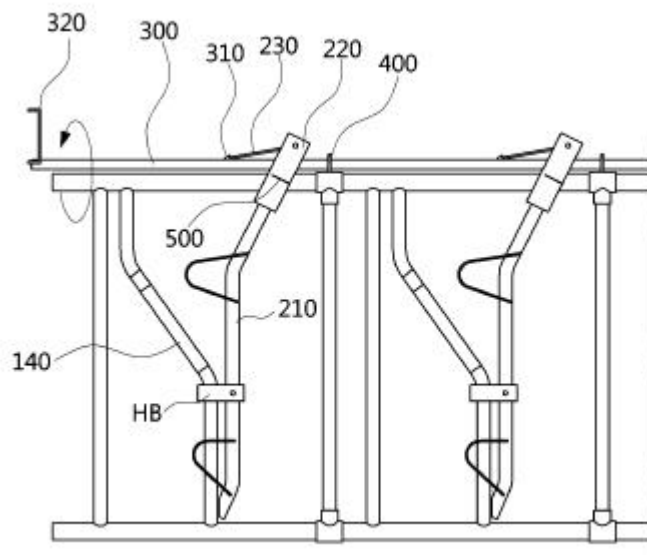
4. 선행디자인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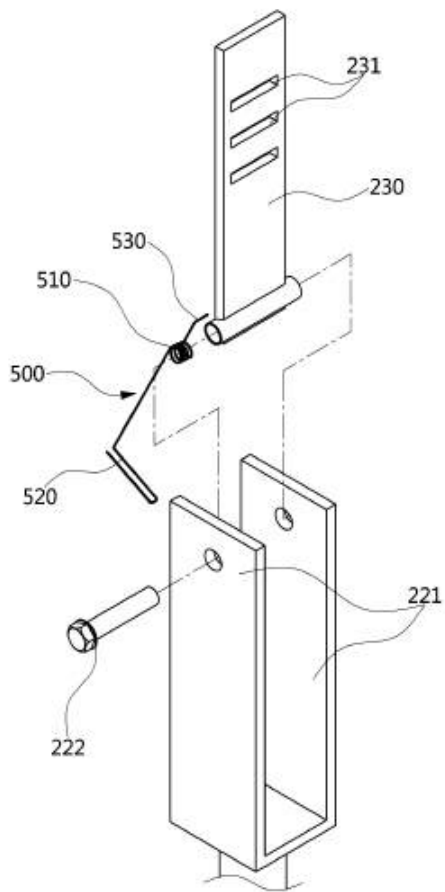
도면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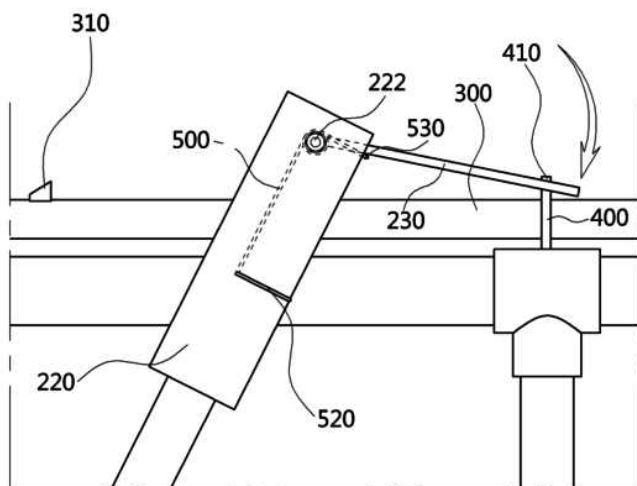
도면 2



도면 3



도면 4



도면 7

끝.